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2년 5월 31일(화) 15:0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1명)

■ 참석의원 : 김진곤(의장), 천성오(부의장), 이건영, 박수원, 김태훈,
김민수(6명)

■ 불참의원 : 이경훈, 신상진, 박민태, 전시찬, 고민석(5명)

4. 안 건

가. 심의 : 규정 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교육지원팀

나. 보고 : 규정 개정/제정/폐지(안)

안 건		상정부서
2.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육지원팀
3.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4.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5.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교수지원팀
6.	명예교수 규정 폐지(안)	
7.	강의전담교원 규정 폐지(안)	
8.	강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일반대학원
9.	대학원 장학 규정 개정(안)	
10.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인권센터
11.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12.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13.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폐지(안)	
14.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안)	
15.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폐지(안)	

16.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기획예산팀
17.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18.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시설관재팀
19.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20.	로봇게임단 운영 규정 개정(안)	홍보팀
21.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안)	중앙도서관
22.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23.	직무발명 규정 개정(안)	산학협력단

다. 자문

24) 고정자산 변동(안) - 교내 업무용 차량(버스) 매각

5.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 김진곤 의장이 성원 확인 후(총원 11명 중 6명 참석) 개회를 선언하다.

[심의 : 규정 개정(안)]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2024학년도 입학정원 확정사항 반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거 복수 학위 또는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명시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 도입과 지능형로봇학과 설립에 따른 학사제도 개편사항 검토 반영
 - [별표6] 입학년도별/단과대학별 이수학점 안내 업데이트
- 주요 내용
 - 제3조(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항, ②항 [별표1] 개정 : 2024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제8조(학년과 학기) ③항 신설 및 ④항 항 번호 변경 : 집중,유연학기제 적용
 - 제49조(전공이수) ①항 [별표6] 개정
 - 제4절 명칭 및 제52조 개정 : 명칭 정리 및 마이크로전공 추가
 - 제65조(학위수여) 8호 개정 : 복수학위,공동학위 수여 가능하도록 근거 명시
- 김태훈 의원이 마이크로전공 정의에 대해 질의하고, 교무처장과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황은성 초빙교수가 마이크로전공에 대하여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공학계열 학과의 경우 마이크로전공 신설로 인한 공학인증제도

와의 문제 가능성 및 악용(공학프로그램에서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우려하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다.

- 교육지원팀장이 마이크로전공은 교육부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7개 공유대학에서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과정임을 설명하고, 학칙 개정 후 관련 사업단과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신속하게 논의하여 확인 및 보완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안하다.

- 천성오 의원이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도 공학계열 및 비공학계열 학생 모두에게 마이크로전공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학인증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 대학 사례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하다.

- 김진곤 의장이 학칙 제52조 개정(안)에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니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완,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마이크로전공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완,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하다.**

【보고 : 규정 개정/제정/폐지(안)】

2) 계절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 도입과 지능형로봇학과 설립에 따른 학사제도 개편사항 검토 반영
- 지능형로봇학과 복수학위를 위한 공유대학 집중이수과정에 참여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지능형로봇학과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 내용

- 제5조(수강 학점) 개정

- : 단서조항 추가(지능형로봇학과 복수학위를 위한 공유대학 집중이수과정에 참여중인 학생의 적용사항 반영)

- 박수원 의원이 공유대학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지능형로봇학과로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인 표현으로의 변경을 제안하다.

- 이건영 의원이 계절수업 수강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 교무처장이 내규는 총장품의 후 시행하며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은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리가 가능할 것임을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이 공유대학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5조(수강 학점) 매 계절수업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타 대학교류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으로 한다. 단, 복수학위를 위한 공유대학 집중이수과정에 참여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3)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상위 규정인 학칙 제52조(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연계·융합전공)에 따라 본 규정 명칭을 통일성 있게 개정하고, 규정 전체를 학칙과 통일성 있는 문구로 정비
-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 도입과 지능형로봇학과 신설에 따른 학사제도 개편사항 검토 반영

▪ 주요 내용

- 규정명칭 개정(학칙과의 통일성 반영)

: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개정 : 마이크로전공 추가 및 학칙과 통일성 있는 문구로 정비
- 제5조(이수학점) ③항 개정 및 ⑤항 신설
- 제12조(전공이수사정) ①항 문구 정비 및 ②항 삭제
- 제2조(전공종류) 이하 제15조(학위수여) 까지 : 학칙 문구와 통일

▪ 박수원 의원이 제3조(적용범위) “.....또한 체육특기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할 수 없다.”의 문구에서는 통일성 정비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체육특기자의 다전공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

- 교무처장이 체육특기자의 다전공 적용범위 사항은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체육특기자의 다전공 적용범위 사항은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하다.

4)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성적평가 자료 제출방법 변경

- 성적평가 자료 보관방법 변경
- 교수자의 성적 산출근거 자료 보존기간 변경

- 주요 내용

- 제13조(성적평가 자료 보존) 개정

- 박수원 의원이 성적평가표를 온라인으로 제출 및 전산시스템으로 영구 보관하기 위해서는 본교 전산시스템에 안전하게 접근(공인인증서 로그인)하는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하다.

- 교육지원팀장이 교수가 성적 저장, 마감 후 제출버튼을 누르면 제출한 날짜와 교수이름이 적히며 PDF파일로 저장되고 PDF파일 형태로 보관됨을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이 교수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로 서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PDF 저장 시 서명 기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 교무처장이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컴퓨터 조작 등이 익숙하지 않은 교수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보통신처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처에 상기 내용을 전달하여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다.

- 박수원 의원이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대부분 교·강사가 성적 산출근거를 대학 전산시스템인 KLAS를 이용하여 제출받고 있는데 KLAS 보관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므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 교무처장이 정보통신처에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다.

- 박수원 의원이 전산시스템이 온라인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중복 표현을 피하기 위해 문구 수정을 제안하다.

- 김진곤 의장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서명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통신처와 논의하여 구현이 가능하다면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성적 산출과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정리하다.

- 제13조(성적평가 자료 보존) 대학 교내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한 성적평가표(제출용 성적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 서명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구현이 가능하다면 2022학년도 1학기 성적 산출과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하다.**

5)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전면 개정 사유

- 속성별 조항 단위의 현 규정을 교원별 장 단위로 전면 개정(개편)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
- 개별 비전임교원 규정(명예교수, 강의전담교원 등)을 본 규정에 통합 또는 폐지하여 단일화하고자 함
- 엄격한 자격 및 임용 절차 등을 일부 완화하여 비전임교원 초빙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도모코자 함

▪ 주요 내용

- 전면 개정
- 석좌교수·객원교수 자격 등 완화
- 초빙교수 재임용 가능 및 제한 기준 추가
-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초빙교수 구분
- 특임교수 신설

▪ 박수원 의원이 특임교수의 자격 및 임용·재임용 조건 등을 봤을 때 특임교수 제도의 남용 및 악용 우려를 표하며 견제 장치를 두어야 함을 언급하고, 기금이나 사업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만 재임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다.

▪ 교무처장이 특임교수의 임용은 추천에 의하지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재임용의 경우에도 성과 및 업적 등을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설명하다.

▪ 김진곤 의장이 교비 투입한 특임교수 재임용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시 특임교수의 업적 및 예산 결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특임교수의 자격, 임용·재임용과 관련하여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규정 전면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전제조건으로 특임교수의 자격, 임용·재임용과 관련하여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로 하다.

6) 명예교수 규정 폐지(안)

▪ 교무처장이 폐지사유를 설명하다.

▪ 폐지 사유

- 본 대학의 비전임교원 관련 제 규정을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단일화하여 전면 개정함에 따라, 본 규정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명예교수 규정」: 폐지

▪ 의원 전원이 폐지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규정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7) 강의전담교원 규정 폐지(안)

- 교무처장이 폐지사유를 설명하다.
- 폐지 사유
 - 본 대학의 비전임교원 관련 제 규정을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단 일화하여 전면 개정함에 따라, 본 규정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강의전담교원 규정」: 폐지
- 의원 전원이 폐지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규정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8) 강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강사징계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함
 - 강사 징계 절차를 보완하여 강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25조(징계) ①항, ②항 삭제
 - 제25조(징계) ③항 개정
 - 제25조(징계) ④항 신설 및 ⑤항 항번호 변경
- 박수원 의원이 당사자가 서면(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여 진술할 기회가 없는 경우에도 징계의결 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김진곤 의장이 안내 노력의 증빙자료(서면,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안내한 사실 기록)가 있을 경우 가능함을 답변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9) 대학원 장학 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 과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연구조교장학금 선발권에서 제외되는 단과대학 소속 외국인특별전임교원에 게도 장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를 개선' 하고 우수한 대학원생 입학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
- 주요 내용
 - 제3조(장학금의 종류) ④항 [별표1] 개정
- 이건영 의원이 개정(안)과는 별도로 [별표1] 연구조교장학금의 지급요건 4번

표에서 “전임교수 상위 5명”의 표현에서 “전임교수” 자구가 삭제 또는 변경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대학원 교학팀 과장이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별표1] 연구조교장학금의 지급요건 4번 표에 관한 사항은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하다.**

10)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대학원 교학팀 과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편입학 및 재입학자에게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2조(신청자격) ③항 신설
 - 제3조(신청대상 제외자) 2호 삭제
- 김진곤 의장이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 제2조(신청자격) ③ 편입생은 본교에서 인정받은 편입학 인정 학기와 본교에서 이수한 학기를 합하여 6학기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평점평균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산정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1) 광운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 인권센터장이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정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2022. 4. 18)됨
 - 이에,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또한, 본교 구성원 인권 침해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인권센터
 - 제3장 인권·성평등상담실
 - 제4장 학생상담실
 - 제5장 장애학생지원실
 - 제6장 보칙
- 김진곤 의장이 본 안건은 제정(안)으로 제1조부터 순차적으로 의원들에게 의견

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 **[제5조(조직과 구성)]**

- 박수원 의원이 제5조 ⑤항을 제6조 ②항으로 이동하고 제6조의 명칭을 (자문위원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다.

제5조(조직과 구성) ⑤ ~~상담 또는 기타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상담사를~~ 들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들 수 있다.

② 상담 또는 기타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상담사를 들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김진곤 의장이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최소 인원을 정해놓을 필요성을 언급하고, 박수원 의원이 당연직이 4명임을 감안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다.

또한, 박수원 의원이 제8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인권·성평등상담실장, 학생상담실장, 장애학생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학내외에서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본교 전임교원과 직원 및 학생 중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같은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제11조(예방교육), 제12조(예방교육의 의무화)]**

- 박수원 의원과 이건영 의원이 예방교육의 주체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제11조(예방교육) ② 센터는 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무처, 총무처, 학생처 등 유관 부서와 교육을 진행한다.

제12조(예방교육의 의무화) ①항 및 ②항에서 '센터와 대상별 교육 담당 부서는' 자구 삭제

▪ **[제13조(인권·성평등상담실의 구성)]**

- 박수원 의원이 제13조의 명칭을 '인권·성평등상담실의 구성 및 역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제13조(인권·성평등상담실의 구성 및 역할)

▪ [제15조(인권 심의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

- 이건영 의원이 인권 심의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의 계층 구조에 대하여 질의하고, 인권센터 담당 직원이 두 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조사부터 종결까지 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조사부터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위원회의 명칭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닌 다른 명칭(예, 특별심의위원회)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민수 의원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과 위원 대상 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함을 언급하다.
- 이건영 의원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법적 필수사항인지 질의하고, 인권센터 담당 직원이 법적으로는 운영위원회 구성만이 필수임을 설명하다.
- 이건영 의원, 김민수 의원, 박수원 의원이 본 규정 제정 시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보완(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하다.

제15조(인권 심의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 ①, 다만, 사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 이후부터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전부 삭제

▪ [제18조(신고)]

- 이건영 의원이 기명의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질의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제18조(신고) ①, 단,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김민수 의원이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지를 질의하고,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제18조 ③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다.

제18조(신고) ③ 삭제

- 김진곤 의장이 본 규정 제21조 이후부터는 의원 개별적으로 확인 후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추가 보고사항]

이후, 김진곤 의장과 한종희 인권센터장이 상의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은 보류(자진철회)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며, 의원 전원에게 공지 및 동의를 구하다.

▪ **의결내용 : 규정 제정(안)을 보류(자진철회)하며, 수정 및 보완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12)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인권센터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2022. 4. 18)됨. 이에,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의 업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5장(학생처) 제9조(학생상담센터) 삭제
 - 제13장 인권센터 신설
 - 기존 13장부터 장 번호 및 조 번호 변경
- 의원들이 체계적 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와 목 체계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13장 인권센터

제24조(인권센터) 인권센터 소속 각 실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성평등상담실
 - 가.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
 - 나. 학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교육
 - 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
 - 라.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업무
2. 학생상담실
 - 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상시 심리상담(개인상담, 해석상담, 위기상담 등) 업무
 - 나. 재학생 심리진단 업무
 - 다. 정신건강 교육 및 특강관련 업무
 - 라. 심리상담 관련 연구 및 출판 업무
 - 마.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업무
3. 장애학생지원실
 - 가. 장애학생 지원 업무
 - 나. 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업무
 - 다.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업무
 - 라.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업무
 - 마.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업무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3)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폐지(안)

- 인권센터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폐지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4장 학생상담실 안에 기존의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내용을 통합하고자 폐지함
- 주요 내용
 -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폐지
- 의결내용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보류(자진철회)에 따라, 본 규정 폐지

(안)도 보류하기로 하다.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재상정 시, 본 규정 폐지(안)도 재상정 예정

14)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안)

- 인권센터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폐지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안에 기존의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내용을 통합하고자 폐지함
- 주요 내용
 -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
- 의결내용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보류(자진철회)에 따라, 본 규정 폐지

(안)도 보류하기로 하다.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재상정 시, 본 규정 폐지(안)도 재상정 예정

15)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폐지(안)

- 인권센터장이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폐지 사유
 - 본교에 인권센터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인권센터 및 인권센터 산하 각 실 (인권·성평등상담실, 학생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함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5장 장애학생지원실 안에 기존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내용을 통합하고자 폐지함

- 주요 내용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폐지

▪ **의결내용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보류(자진철회)에 따라, 본 규정 폐지(안)도 보류하기로 하다.**

→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재상정 시, 본 규정 폐지(안)도 재상정 예정

16)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 기획처 기획예산팀 차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공간관리 규정 현행화 및 2022학년도 제1차 공간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 주요 내용

- 공간관리 규정 제3조(용도의 구분) : 5호 공용시설, 6호 기타시설 신설
- 공간관리 규정 제4조(공간의 정의) : 9호 대학원공동연구실 정의 문구 변경
- 공간관리 규정 제8조(공간배정원칙과 기준) [별표1] 개정

▪ 박수원 의원이 제3조(용도의 구분) 6호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제3조(용도의 구분) 6. 기타시설 : 위 각 호 외의 공간

▪ 박수원 의원이 [별표1]에서 대학원공동연구실의 경우도 연구용실험실과 같이 1인당 면적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 기획처장이 [별표1]에서 1실의 면적기준은 22~28㎡을 말하며, 실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연구실의 경우 인원을 추가로 배정함을 설명하다.

- 박수원 의원이 연구용실험실이 1인당 14㎡임을 감안하여, 대학원공동연구실의 기준을 전일제 대학원생 1인당 3.5㎡로 배정함을 제안하다.

[별표1]

연구용 실험실	이공계열 교수 1인당 14㎡	가. 추가배정 및 회수는 공간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 나. 학과 단위로 공동배실 가능
대학원 공동연구실	전일제 대학원생 1인당 3.5㎡	건물별 공동 배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7)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 기획처 기획예산팀 차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반영
 - 민주적·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제반사항이 논의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정비
- 주요 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임원 및 직무) : 문구 변경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사임) : 문구 변경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 내용 수정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간사) : 문구 변경
- 김진곤 의장이 제6조(임원 및 직무) ③항과 제7조 ①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6조(임원 및 직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8)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 관리처 시설관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정부기관 명칭이 개편될 때마다 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특정 정부기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정부'라는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12조(정밀안전진단) : '미래창조과학부령' → '관련 정부부령'으로 개정
 - 제13조(연구실 사용제한), 제20조(안전관리비 계상), 제21조(보험가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관련 정부부서 장관'으로 개정
- 김진곤 의장이 규정상 '정부'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임을 언급하고, 박수원 의원이 '관련정부부령' 대신 해당 부령 명칭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또한, 김진곤 의장이 '관련 정부부서 장관' 대신 '관련 주무 장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 ②

3. 연구개발활동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제13조(연구실 사용제한) ③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관련 주무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비 계상) ① 본교는 실험실 안전관리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때에는 관련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본교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19)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 관리처 시설관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을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3조(구성)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20) 로봇게임단 운영 규정 개정(안)

- 기획처 평가감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대리설명)
- 개정 사유
 - 로봇게임단 업무 지원부서명을 기존 '대외교류팀'에서 실제 로봇게임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홍보팀'으로 변경함
- 주요 내용
 - 제8조(업무지원) 개정 : 대외교류팀 → 홍보팀
- 이건영 의원이 우리 대학의 특성화된 학과로 발전시키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처음에는 로봇게임단이 로봇학부에서 관리를 했지만, 그 이후 학생처, 대외국제처 홍보팀으로 관리부서가 이동되면서 학교의 홍보역할만 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에서 좋은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다.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21)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운영 규정 개정(안)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과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장을 도서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7조(구성) 개정 : 당연직 위원으로 학술정보팀장 추가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22)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과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직제 개편(팀 통합)에 따른 학술정보팀 업무 중 중복된 내용을 수정(삭제)하고자 함
 - 학술정보팀 업무 중 '대학사 기록물 관리 업무'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 본교 출판 간행물의 납본 권수 변경에 따라 도서 납본 관련 내용을 변경 및 삭제하고자 함
 - 도서관 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2조(학술정보팀) - 1호 '파'목 삭제, 5호 세분화
 - 제7조(납본) - ①항 및 ②항 개정, ③항 신설
 - 제29조(개관시간) - ①항 개정
- 박수원 의원이 제2조(학술정보팀) 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다.

제2조(학술정보팀) 1.

카. 도서관 업무 기획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 가결하다.**

23) 직무발명 규정

- 산학협력단 경영관리팀장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개정 사유
 -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일반 전임교원들의 산학연협력활동 활성화 유도
 - 등록 특허 누적 건수 증가에 따른 유지비용 예산 부담 및 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지식재산권의 계속지원 사유의 실제 이행률 저조
- 주요 내용
 - 제15조(비용부담) ①항 개정

- 제31조(직무발명의 권리존속여부) ②항 1호 개정
 - 박수원 의원이 우리 대학 직무발명 규정상 해외 발명에 대한 비용부담 부분이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안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다.
 - 김진곤 의장이 상기 사항은 오늘 상정 개정(안)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차후 재논의 하기로 하다.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 의결내용 :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자문 : 고정자산 변동(안)】

24) 고정자산 변동(안) - 교내 업무용 차량(버스) 매각

- 관리처 시설관재팀장이 교내 업무용 차량(버스) 매각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지입차량(셔틀버스) 도입으로 활용성이 거의 없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수리비, 보험료 등의 유지관리비 지출에 따른 매각임
 - 매각 대상 차량대수는 1대임
 - 박수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현대 자동차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방문 견적을 추가로 요청한 결과, 관리처 매각(안) 견적보다 낮은 금액임을 확인함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자문하다.







6. 폐회

의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2년 5월 31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김 진 곤	
부 의 장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이 건 영	(서명) 
평 의 원	박 수 원	(서명) 
평 의 원	이 경 훈	(서명)
평 의 원	신 상 진	(서명)
평 의 원	김 태 훈	
평 의 원	박 민 태	(서명)
평 의 원	전 시 찬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고 민 석	(서명)